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3. 7.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9월 27일 신현영의원 등 32인

나. 회부일자 : 2021년 9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2021. 11.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2법안심사소위원회(2023. 3. 22.)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전체회의(2023. 3.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신현영의원)

코로나19 대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병상의 확보 및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에 있어 중

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임상 현장에 필요한 여러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하고 있음.

그런데도 현행 법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해서만 지정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을 뿐이며,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수행할 업무를 명시함. 아울러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신항진)

개정안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각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각 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기관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감염병연구병원은 운영 중이거나 설치·지정을 계획 중인 바 없으므로, 법 제8조의2제1항을 포함한 이후 조문에서 감염병연구병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의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가 아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산하에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이며, 그 자문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셋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유행하는 신종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역할이 변경·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 제8조의2제2항 각 호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열거하기보다는 하위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연하고 신속한 기능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인 바, 이러한 소관 부처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개정안에 열거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 역시 질병관리청 등 타 부처 업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훈식)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